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일시 : 2024년 5월 27일 (월) 13시 30분 / 장소 : 방송회관 9층 방송기자연합회 교육장

감사 개요

POINT 1

“이해충돌”

POINT 2

“부당징계”

감사 개요



청구인

- <방송> 1.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479명(2023. 5. 31.)
- <통신> 2. ○○○○ 등 309명(2023. 7. 21.)

> 특정 단체 신청 방송민원에 대해 처리 지연 / 부적절한 심의

> 국가보안법 위반 통신 신고 건에 대해 부적절한 심의 처리



기간

- 사전 검토 등 : 2023. 6. 13. ~ 9. 1.
- 감사 실시 : 2023. 9. 25. ~ 10. 31.
- 최종 확정 : 2024. 4. 25.
- 결과 통보 : 2024. 5. 13.



결과 요지

<방송>

- 1-1. 특정 안건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 확인 불가
- 1-2. 특정 안건에 대해 별도 심의기준 적용하지 않음

<통신>

- 2-1. 미유통 각하 이후, 일부망 유통을 인지하고도 자체 심의하지 않음
- 2-2. 경찰청 신고 건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 신고 건의 첨부자료를 누락

> (주의)처리기간 지연 시, 민원인에게 세부 정보 안내 필요

> (통보)이해충돌법 제정 취지 반영, 심의위원에게 민원인 정보 제공 필요

> (문책)해당 팀장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 (주의)향후 국보법 위반 심의 시, 부당 각하 및 증거자료 누락 주의

1. 방송심의

특정 단체가 심의신청한 민원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대부분 문제없다고 하고, 2건의 중대 제재대상에 대해 법적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를 결정하는 등
심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해당 방송민원이 비교대상보다 장기간 지연 처리되었다거나 별도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처리 지연 시 이를 민원인에게
세부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 의견과,
심의위원이 민원인에 대해 직무관련자/사적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통보' 의견

감사청구 취지

"특정 단체"가 신청한 방송민원의

- 1) 민원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 2) 대부분 문제없다고 하는 등

"심의 결과가 부적절"하다



감사결과

"특정 단체"가 신청한 방송민원의

- 1) 처리가 평균 대비 지연되지 않았으며
- 2) 통상적인 기준/절차에 따랐으므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1. 방송심의

(감사청구 취지와 무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이 민원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주의)

민원인에게 처리 연장을 통보할 때, 사유와 예상 처리일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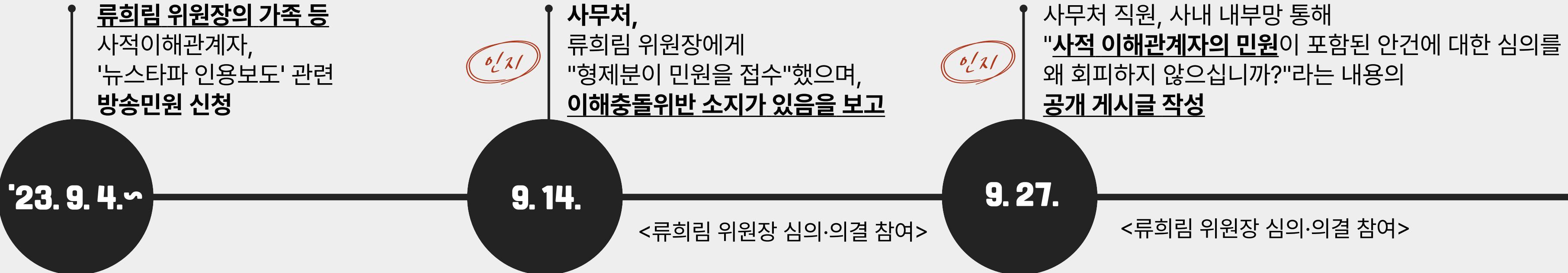
"방심위원에게 민원인(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방심위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회피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음**"

심의위원이 민원인에 대해 직무관련자/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원인 및 방심위원의 제재조치 결정 등으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방송사업자나 관계자 등은
심의를 수행하려는 방심위원의 직무관련자가 된다.



2. 통신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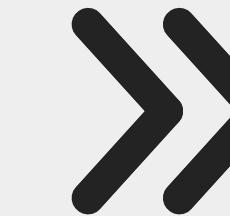
「국가보안법」위반 불법정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요청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접수를 거부하거나, 명백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요청을 기각하는 등 심의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조선관광' 사이트가 일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데도 미유통을 사유로 잘못 각하 처리하고 이후 국가정보원의 연락을 받아 유통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심의 개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사이트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민주노총 홈페이지 연대사' 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요청내용과 증거자료를 통신소위에 제공하지 않는 등 심의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방심위 직원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해야 한다는 '문책' 의견

감사청구 취지

"국가정보원"의 국보법 위반 차단 요청에

- 1) 심의접수를 거부하거나
- 2) 불법이 명백함에도 요청을 기각하여

"심의 처리가 부적절"하다



감사결과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통신 민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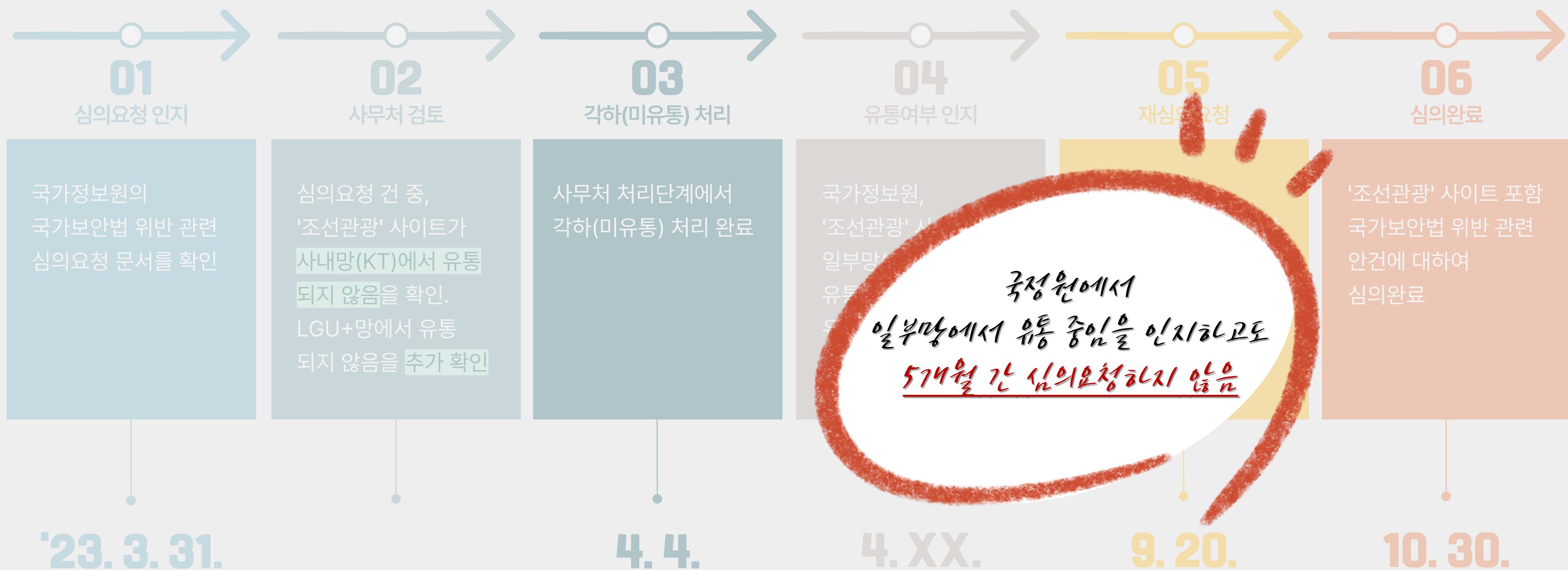
- 1) 미유통으로 각하되었더라도, 유통 확인 시 국정원 요청과 무관하게 당연히 심의를 지속해야하고
- 2) 국정원의 첨부자료를 누락하여 부실 제공했으므로

담당자를 "징계처분"해야 한다

2-1. 통신심의 <'조선관광' 사례>



2-1. 통신심의 <'조선관광' 사례>



2-1. 통신심의 <'조선관광' 사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 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2-1. 통신심의 <'조선관광' 사례>

방심위 출범 이후 (2008~2024.4.)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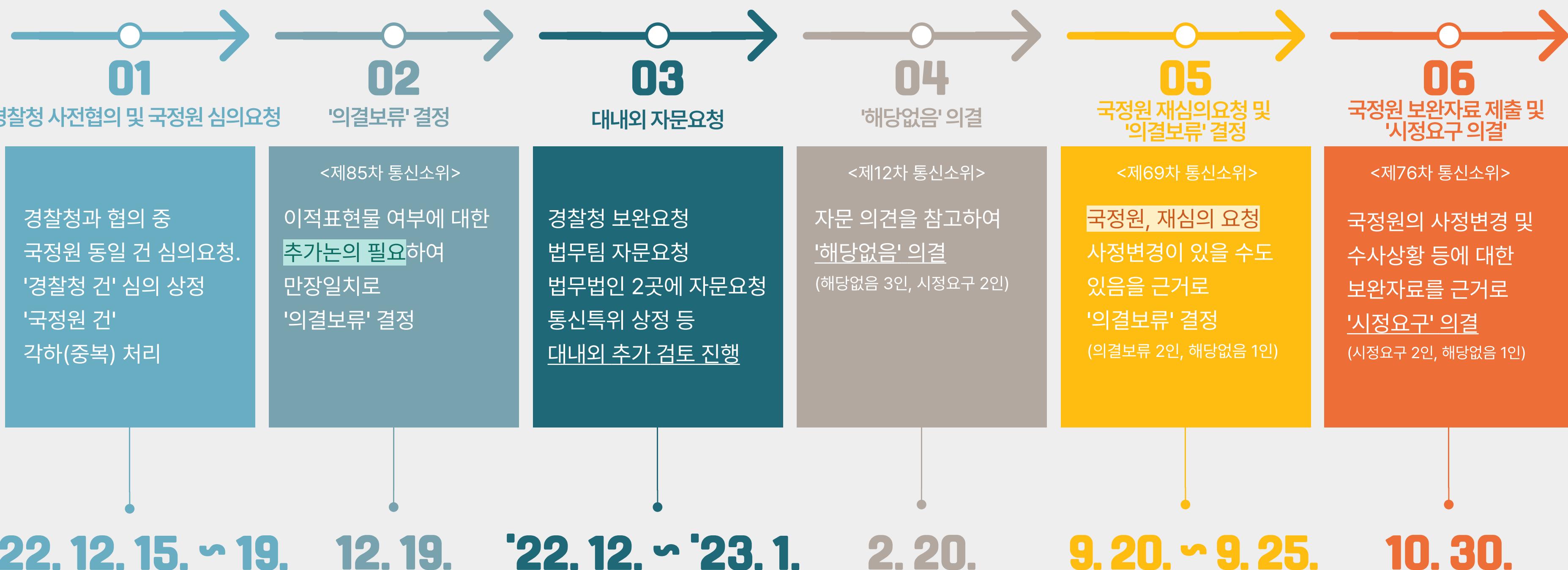
27,610 건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건 中
"방심위 자체인지" >>

0 건

2-2.

통신심의 <'민주노총 홈페이지 연대사' 사례>



2-2.

통신심의 <'민주노총 홈페이지 연대사' 사례>

**국정원 자료
누락으로
심의 지연**

국정원 자료는 위원회가 요청하여 제공한 외부 자문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특별히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참고자료
부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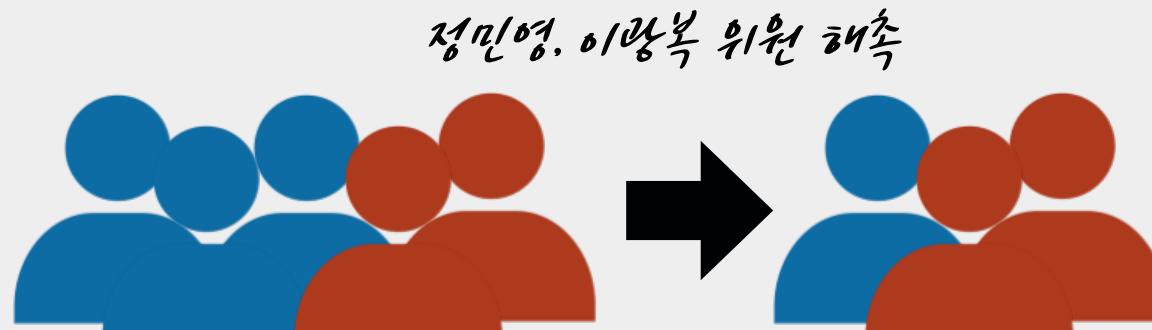
사무처에서는 경찰청에 보완자료 요청, 내부 법무팀 검토의견 요청, 2개 법무법인에 외부자문 요청,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자문 요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자체 노력

**명백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이적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던 정보로,
서울행정법원은 '23.12.4. 방심위의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대사 게시글은 현재 유통 중임

2-2. 통신심의 <'민주노총 홈페이지 연대사' 사례>

위원 구성 변경이 주요 변수



해당없음 : 이광복, 윤성옥, 정민영
시정요구 : 황성욱, 허연희

해당없음 : 윤성옥
시정요구 : 황성욱, 김우석

'국정원 자료' 이전, 유사 근거 인지 후 심의 참여

<제12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3. 2. 20.)>

정민영 위원 :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늘 내 놓는 주장이 이 게시물에 일부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않고"

윤성옥 위원 : "윤석열 정부와 미국에 대한 비판, 한·미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또 남북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반전 평화와 조국통일에 앞장서자는 주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황성욱 위원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라는 곳을 사실상 북한의 체제상 북한에 민간단체라든지 독자적인 단체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북한 당국이 보낸 것과 동일하게 봐도 무방"

'시정요구' 할 때까지 재심의 요청?

<제69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3. 9. 25.)>

윤성옥 위원 :

"북한의 노동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 및 공동결의문인 안건은 사실 이거 연대사를 지난번에도 우리 심의 때 논의했습니다. 연대사를 통일부가 승인한 신고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은거라는 점이 있었고 또 이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우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셨듯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협한다든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국정원이 안건을 재심을 요청했는데요. 변경사항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심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 의미 및 한계

감사 배경

'[단독] 국정원의 北 사이트 차단 요청, 방심위가 번번이 심의 거부(조선일보, 2023. 5. 3.)' 언론보도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2023. 7. 21.) 등으로 실시
> '조선관광'(각하) 사례와 '연대사'(해당없음) 사례 등을 근거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인 방심위원 구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

독립성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규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 및 기관의 민원이 요청한 바와 다르게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감사의 대상이 됨
> 차후 유사 단체 및 기관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방심위 직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

재심의 청구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따라 심의 업무를 지원한 방심위 직원에 대한 문책은 부당함
감사원이 지적한 실무 처리가 심의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존중, 업무 효율성 및 적절성 고려 필요**
> 시스템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함

감사원 징계처분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철회되어야 합니다

